

## 전국기록인대회 각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

### □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

- 조직위원회는 주관기관(한국기록관리학회, 한국기록학회, 한국기록전문가협회)의 대표자 및 주관기관 단체에서 파견한 담당자 1인씩 총 6인과 주관기관이 아닌 주최기관에서 파견한 대표자 또는 담당자 1인씩으로 구성함
-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주관기관 3단체의 대표자 3인이 공동위원장으로 함
- 조직위원회는 기획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구성승인, 위원장 선임, 대회일정 및 프로그램 확정 등을 담당함

### □ 기획위원회의 구성

- 기획위원회는 주관기관(한국기록관리학회, 한국기록학회, 한국기록전문가협회) 3단체 담당자 1인씩 총 3인(이사 또는 협회 운영위원 이상으로 하며 조직위원이 아닐 수 있음)과 자율 모집을 통하여 참여한 4인, 총 7인 이내로 구성함(주최기관이 참여하였을 경우 별도의 모집을 진행하지 않음)
-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주관기관 3단체 담당자 중 1인(조직위원이 아닐 수 있음)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음(조직위원회에서 선임)

### □ 기획위원회의 역할과 프로그램의 구성

- 기획위원회는 1일차 프로그램을 기획·구성하며, 2일차 프로그램 참여 기획(안)에 대한 심의 및 2일차 기획 프로그램을<sup>1)</sup> 담당함
  - 1일차 프로그램은 학술발표를 중심으로 하며, 발표와 토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함
  - 1일차 프로그램은 별도의 참여 기획(안)을 받지 않고 기획위원회에서 구성함
- 1일차 프로그램
  - 1일차 프로그램은 기획위원회에서 구성함
- 2일차 프로그램(학술프로그램 및 포스터 세션)

1) 기획프로그램은 조직위원회 및 기획위원회가 당해 전국기록인대회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세션을 의미함

- 2일차 프로그램은 최대 15개 이내의 세션으로 구성하며, 개인 및 단체 모두 참가신청이 가능함. (단 조직위원회 합의를 통해 세션 수는 조정은 가능)
- 단체의 경우 하나의 세션 전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, 단체의 발표는 전체 세션의 2/3으로 제한함(이 경우 해당 세션은 참여단체가 자발적으로 구성)<sup>2)</sup>
- 기획위원회는 최대 5개 내외의 기획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음<sup>3)</sup>
- 개인발표의 경우 유사한 주제를 묶어 세션을 배정함
- 한 세션의 발표는 3개 내외로 한정하며, 적절한 토론시간을 부여해야 함
- 기획위원회는 제안서 심사를 통해 세션(또는) 발표를 제한 할 수 있음<sup>4)</sup>

#### ○ 자료집 출판

- 기획위원회는 자료집 출판 담당자를 선임하여, 자료집 출판을 담당함
- 자료집의 경우 요약본을 원칙으로 함(발표 당 A4 5매 이내)<sup>5)</sup>
-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할 수 있음

#### □ 집행위원회의 구성

- 집행위원회는 주관기관 3단체(한국기록관리학회, 한국기록학회, 한국기록전문가협회) 실무자(또는 담당자) 1인씩 총 3인과 주최기관 및 자율 모집을 통하여 참여한 기록인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주관기관이 아닌 주최기관은 집행위원 1인을 반드시 파견해야 한다.
-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주관기관 3단체 담당자 또는 실무자 중 1인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음(조직위원회에서 선임)

#### □ 집행위원회의 역할

- 집행위원회는 전국기록인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, 각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함 (별도의 간사채용)
  - 회계관리 및 후원모집, 참가신청 관리 등
  - 홍보 및 포스터, 리플렛, 명찰제작 등과 관련한 사항
  - 1, 2일차 등록데스크 운영 및 1일차 행사장 관리
  - 2일차 세션장 관리(단 단체가 참여한 세션장은 개별로 준비)

2) 발표 및 토론자 자체섭외 및 세션준비 등

3) 개인·단체와 공동기획 또는 기획위원회 자체 기획 모두 가능

4) 유사·동일 주제의 경우 통합제의, 제안서가 미진할 경우 보완 요청 등을 할 수 있음

5) 발표자료 제공 동의서 사전 확보 및 발표 당일 사용 자료의 제공동의서 사전 확보 검토

# 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 정관

2014. 08. 25. 제정

2017. 09. 08. 개정

**제1조 (명칭과 구성)** 우리 모임의 명칭은 ‘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’로 하며, 조직위원회는 주관기관 및 기록관리관련 분야 단체 중 참여를 원하는 단체로 구성한다.

**제2조 (목적)** 우리 모임의 목적은 전국기록인대회를 기록인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·운영하는 데 있다.

**제3조 (사업)** 우리 모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연 1회 이상의 전국기록인대회 개최
2. 기타 제2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**제4조 (주관기관)** ① 전국기록인대회의 주관기관은 한국기록관리학회와 한국기록학회, 한국기록전문가협회로 한다.

②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주관기관의 사무를 지원한다.

**제5조 (주최기관)** 전국기록인대회의 주최기관은 주관기관을 포함하여, 각년도 전국기록인대회 주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다.

**제6조 (주최기관의 권리)** 주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1.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조직위원 또는 기획위원·집행위원으로서 활동한다.
2. 학술프로그램 중 1개 세션을 운영할 수 있다.

**제7조 (주최기관의 의무)** 주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
1. 조직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의 대회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2. 대회 준비를 위한 실무담당자를 파견하여야 한다.

**제8조 (위원장)** ①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담당한다.

②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주관기관 대표의 임기로 한다.

**제9조 (위원)** ① 조직위원회 위원은 주최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으로 한다.

② 조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년도 회기로 한다.

**제10조 (소위원회)** 조직위원회는 전국기록인대회의 실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기획위원회 : 프로그램 기획 및 프로그램 심사, 발표 자료집 출판
2. 집행위원회 : 총괄 및 재정관리, 포스터 세션 준비·운영, 각종 후원 및 협찬 관리
3. 기타 조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담당

**제11조 (회의)** ① 조직위원회 회의는 ‘총괄 주관기관’의 대표자인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조직위원회 회의는 조직위원회 위원 3분의 1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.

**제12조 (의결)** 의결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
**제13조 (재정 및 기록관리)** ① 재정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.

1. 주최기관 참가비
2. 개인 참가비
3. 발표자료집 등 도서 판매 대금
4. 후원·협찬금

② 재정 및 기록관리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 담당 한다.

**제14조 (회기)** 회기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.

**제15조 (정관개정)** 정관의 개정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**제16조 (해산)** 해산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**제17조 (기타사항)**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직위원회 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.

**제18조 (시행)** 정관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